

한국산업에 적합한 PL제도 도입 방향

전대열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과

1. 머리말

마포 가스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사고, 삼풍백화점 붕괴등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들은 우리들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고귀한 생명들을 앗아가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고의 빈발로 감각이 무디어진 관계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조그만 사건이나 사고들은 우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이로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실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각종의 제조물은 고도의 과학기술이 결집되어 생산되므로 소비자의 상식은 물론 제조자 자신도 예견치 못했던 결함이 발생되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언론매체나 각종 보고자료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미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제도(PL: Products Liability)를 국내에 도입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부터 발생하는 생명·신체상 위해나 재산상 손실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소비자보호 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PL제도 도입 필요성

올 1월부터 새로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는 국내시장이 완전히 외국 기업에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내시장은 선진국의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수입 되는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이 낮아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수없이 수입되어 이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들 각자가 개개인의 소비자 권리를 향유하려는 소비자 의식이 발전되었고 민간소비자 단체들의 활발한 노

력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기업이 품질제일주의와 고객만족 경영을 모토로 스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을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안전을 내세운 품질경영과 소비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아시아, 남미등 세계 30여개국이 PL제도를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대외 의존적인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PL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제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는 계약책임법리와 불법행위 책임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소비자는 계약관계가 있는 제품의 매도인(판매자)에게 채무 불이행책임 또는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리를 적용할 경우에 피해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결함제조물에 책임이 없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불합리한 점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 무과실 책임이기는 하지만 판매자를 상대로 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는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로 제조된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피해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여건의 성숙과 현행법으로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3. 세계 각국의 입법 현황

제조물 책임법이 가장먼저 발전한 나라는 산업화를 제일먼저 꽃피운 미국이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가 『그린만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한 후 1970년대에 미국의 각주에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제조물 책임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효시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제조물 책임제도의 발전역사는 최초에 과실책임주의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보증 책임으로 현재에는 무과실책임인 엄격 책임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제조물 책임소송의 급증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파동이 2차례에 걸쳐 발생됨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제조물 책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법무장관이 2차례에 걸쳐 개혁을 제언한 바 있으며, 상·하원에서 개혁법안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씩 제출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금년 3월과 5월에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상·하원 법안중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중에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유럽지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촉진,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조물 책임법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8년에 검토를 시작하여 1974년 8월과 1975년 7월 예비초안 공표, 1976년 7월 1차 지침안의 제안 1979년 9월 유럽회의와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가미한 수정지침안을 각료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1985년에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EU 지침을 채택하고 이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각 가맹국들이 국가별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시행중에 있다.

현재 EU 가맹국 15개 국가중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을 비롯하여 14개 국이고 핀란드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EFTA 국가로서는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랜드, 스위스등이 시행하고 있다.

기타 제조물 책임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브라질과 호주가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중국과 필리핀 및 일본이 1994년 6월 30일에 공포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 우리나라에 PL제도 도입상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가인 미국, 일본 및 유럽지역이 거의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불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종다기화 되고 있는 제품으로 부터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나 엄격하고 충분한 검토 절차없이 서둘러 다른나라 제도를 모방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예상된다.

특히 지나치게 소비자 편향적인 1960년대의 과격한 미국식 PL제도 도입은 제조물 책임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의 급증은 우리사회에 변호사 숫자의 증가와 미국식 소송사회화로 발전되어 지나친 사회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업은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제품개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수록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적 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조물 책임배상 소송을 두려워 하여 안전이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시장에 출하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신제품개발 보다는 기존 제품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제조물은 고도의 과학기술이 체화된 제품으로써 제품에 내재된 결함여부를 일반소비자나 피해자가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배상 소송에 관련된 제품에 내재된 결함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시험장비와 전문가가 분야별로 많이 소요될 것이나 현재에는 그러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등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5. 우리나라에서 PL제도의 도입 방향

가. 기본방향

제조물 책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인지되었으나 그 시기와 방법, 내용등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뒤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도입을 위한 논의와 검토는 다음과 같은 기본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결함상품으로 부터 발생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제도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입될 제조물 책임법의 형태는 순수한 민법의 특별한 배상책임법 형태나 소비자 보호법 개정 형태가 아닌 단행법으로 제정하되 그 성격은 사법(私法)적인 성격과 공법적인 형태가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요건은 제조물의 결함이 책임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조물 책임법의 세부내용들은 EU지침등 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추진방법은 특정기관이나 특정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기관, 단체 및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추진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당위성을 앞세워 제조물 책임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졸속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지연시킬 경우 소비자의 복지후생측면을 지나치게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PL도입 세부방향

현재 세계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 제도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제조물의 범위

세계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대는 제조물은 주로 동산과 전기에 국한 시키고 있으나 동산중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축산물, 수렵물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착되어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보일러 등)에는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여 입법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특수하게 분양공급된 건물도 포함시키자고 논의되고 있다.

(2) 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 제도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

으므로 책임부담자가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가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제조물의 책임을 지는 부담자는 제조자이며 제조자에는 완성품 제조자는 물론 부품 또는 원료 제조자,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자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미국의 판례법에서는 제조물책임 주체로 제조물 제조자, 도·소매상, 유통업자를 포함하며 제조자는 완성품 제조자, 부품제조자,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자, 수입상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책임 주체는 제조자, 스스로 제조자를 표시한자, 수입자,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급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결함의 의미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결함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가 대체로 동일하다. 결함이란 소비자가 통상사용 상태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함의 종류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이 있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설계도나 사양서대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상의 결함이란 설계도나 사양서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표시·경고상의 결함이란 제품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결함을 판단함에도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주요국가의 제조물 책임 입법례에서 피해자에게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결함의 입증에 있어 원고는 상품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에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함과 손해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조회사에 비해 월등하게 열등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제조의 면책 사항

제조물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만 발

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절대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제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에 아무런 결함이 없거나 결함의 존재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면제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유통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거나 그 후에 결함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강제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소멸시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을 한정함으로써 무한정한 소송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기업경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책임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책임의 경감

미국의 판례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하고 위험을 알면서 부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오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제품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며 EU지침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할 경우 제조자의 책임을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책임경감 사항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8) 결함의 존재시점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출고 당시의 결함으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오랜 사용후에 결함이 나타난 경우도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EU 지침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내용은 사고발생시에 결함이 있으면 제품이 유통될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킬 시에는 결함이 없었고 그 후에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제조자가 반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자의 무한정한 책임에서 해방시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기타사항

EU지침이나 제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피해자나 가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능력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결함제품 입증 공식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구제를 신속 공정하게 해줄

수 있고 사법기관까지 가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제조물책임 중재기관의 설치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제조물 책임 보험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경감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

제조물 책임제도는 제품이 판매된 후에 소비자의 사용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명존중 인간존중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결함없는 제품의 제조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이익창출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함없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될 것이다.

첫째, 기업이 결함없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만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A/S에 이르는 경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전 임직원들이 TQM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방침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조물이 탄생되는 원인행위 과정인 설계과정에서 부터 철저히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계한 제조물로부터 설계상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제품의 제조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설계에서 의도된 데로 안전하게 결함없는 제품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설계서나 사양서대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정신은 고려청자를 만드는 혼과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정성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제조물의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제조물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경고라벨등의 부착은 물론 판매시에 자세한 사용설명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판매된 후의 A/S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자칫 잘못 사용하는 경우나 설계나 생산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A/S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관리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조물로부터 발생될 소송에 대비하여 설계에서 A/S에 이르는 경영의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품질 또는 안전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물의 사용전에 사용설명서나 경고라벨을 읽고 사용설명

서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오용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성숙된 소비자 의식이 필요하며 제조자가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자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보물책임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보호와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맺음말

우리사회가 그동안 대형사고의 빈발로 일반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 주요국가들이 이미 제보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미 제보물 책임제도의 환경속에 살고 있으며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국내시장 역시 외국기업의 판로로 개방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제보물 책임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인 사항이지만 국내 기업환경을 감안하여 도입시기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보물책임시대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생존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A/S에 이르기까지 안전문제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전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는 제보물 책임제도의 도입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도 제보물 책임제도가 소비자를 위한 만능의 제도가 아니고 소비자 스스로가 제조물의 사용시 사전에 경고라벨이나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숙지하여 제품의 오용에 의한 생명·신체상의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줄어나갈 수 있는 성숙된 소비자 의식을 가질 때 결함있는 제조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제보물 책임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